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7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0호, 2018. 9.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식 등) ①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제4조제3항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부대장”을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부대장”을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법 제66조”를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감리원 배치현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용역업자 [ ]자체감리)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 일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신고인 (용역업자)	상 호		신고(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공사업자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용역명 및 현장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 . .
착공예정일자		. . .	준공예정일자	. . .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

감리원 배치현황 (또는 변경 전)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배치기간(일수)
배치변경					
	변경사유 :				

2이상의 공사 감리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용역명 (총공사금액)	배치기간(일수)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 ]배치현황신고 [ ]배치현황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발 주 자)

○○시장(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3.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2.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 성 방 법

1.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2. 연면적 및 규모: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3. "건축허가번호" 및 "건축허가일자"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4. 총공사금액: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하는 금액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총괄(상주), 보조(상주), 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번호 기재
   라.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예정기간/예정일수)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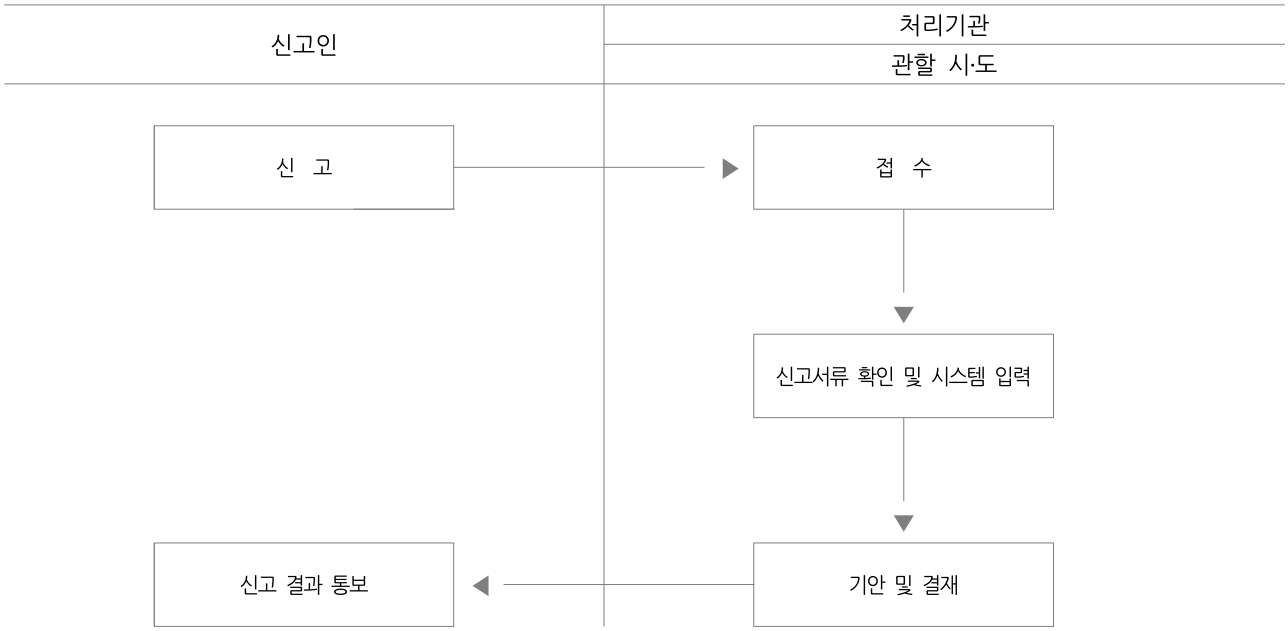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3서식]

감리원 배치확인서

([ ]용역업자 [ ]자체감리)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신고인 (용역업자)	상 호		신고(등록)번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공사업자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용역명 및 현장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__층, 지상__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 . .
착공예정일자		. . .	준공예정일자	. . .
총공사금액			공사기간	~

감리원 배치현황 (또는 변경 전)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배치기간(일수)
배치변경					
	변경사유 :				

2이상의 공사 감리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용역명 (총공사금액)	배치기간(일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변경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중 “활동주체 신고번호”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활동주체 신고번호”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로 하고, 제2호나목 1)의 “전기통신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활동주체 신고번호”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목 및 내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목 및 내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8)발주자분류부호 중 [민간부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부분]

(가). 제조업

900 식료품 제조업
901 담배제조업
90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90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0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9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0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0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0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9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12 1차 금속 제조업
9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9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16 전기장비 제조업
9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21 기타 제품 제조업
923 음료 제조업
9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25 가구 제조업
926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나). 비제조업

950 농업, 임업 및 어업
951 광업
95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53 도매 및 소매업
954 숙박 및 음식점업
955 운수 및 창고업
956 금융 및 보험업
957 부동산업
958 건설업
95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60 교육 서비스업(국공립을 제외한 사립 교육기관)
9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6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3 개인
96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65 정보통신업
9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68 기타

별지 제29호서식 제목 및 내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4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8조제6항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식 등) ①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제6조(상속관련 변경신고 처리)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공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1. ~ 3. (생 략)	
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① ~③ (생 략)	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6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